

주제회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인권

지속가능‘발전’을 지속가능‘전환’으로

김형완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앞으로 “인간의 존엄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인권보장의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로 개정해야 한다. 주권자의 존엄성 보장의무가 국가에게 있는 만큼 ‘국가정체성’이 인간의 존엄보다 선행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시민법은 자연법의 한계 안에서 보장된다.”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노동의 신성함’과 ‘기회의 평등’을 양축으로 삼아 오늘에 이른 근대 시민권 체제는 효율과 경쟁 중심의 성장주의로 인해, 자연과 인간의 공존, 인간과 인간 간의 공존은커녕, 자연과 인간에 대한 이루 말할 수 없는 수탈과 착취를 일삼았다. 그 결과 우리는 오늘날 기후환경 위기, 양극화 위기, 감염병 위기라는 소위 ‘인류세’의 총체적 재난상황에 직면했다. 이것은 시민권 체제의 파산이면서,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지구의 위기’라기 보다는 인간(자본)이 초래한 ‘인류의 위기’이자 ‘체제의 위기’이다. 근대적 이성과 과학기술 만능주의에 기댄 시민권 체제의 오만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자연법 질서의 교란을 가져왔고 이에 자연 스스로 자기회복적 조정애 돌입하면서 부메랑처럼 인간에게 재난으로 되돌려지고 있는 형국이다.

과거 세계의 주인이 더 이상 ‘신’일 수 없다는 자각과 성찰을 통해 ‘인간’중심의 사회계약을 쟁취했듯이, 이제는 세계의 주인이 더 이상 ‘인간’만일 수 없다는 자각과 성찰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사회계약’을 쟁취해야 한다.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사적 소유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공유부를 비롯해 새롭고 담대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그 핵심은 함께 살기, 즉 공존이다. 생태계의 밸런스 안에서 종(種)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위계화에 반대하며, 중심과 주변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 누구도 배타적으로 존재(소유)할 수 없으며, 소유는 곧 점유이므로 당연히 세습될 수 없다는 것, 당대의 모든 것은 당대의 것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연속선 상에서 존재하며, 특히 인간이야말로 유적존재(類的存在 Gattungswesen) 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서 종적(縱的 causality)이면서 동시에 횡적(橫的 structural)인, 즉 세대와 구조를 가로지르는 호혜와 연대의 새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자연법 질서이다. 오늘날 시민권 체제는 자연권 체제 안에서 작동되기는커녕, 자연권 체제 자체를 위협함으로써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세계 안의 무수한 존재들과의 ‘공존’ 가운데, 그 일부로서 인간이 존재한다는 ‘전환적 기획’이 절박하다. 인간의 존엄은 어디까지나 자연권의 한계 안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인간만이 아니라 공기와 물, 땅과 산, 강과 바다는 물론, 저 하늘의 새와 나무와 벌레와 풀을 포함한 지상의 모든 생명체, 그리고 지하의 모든 자원까지 그 자체로 존엄성이 인정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도 인간 중심주의를 명분으로 구성된 약탈적(시장주의적) 시민권 체제를 넘어, 조화와 균형이라는 공존의 질서가 관철되는 자연권 체제 안에서 비로소 인정되고 존재한다. 따라서 나는 우리 헌법 제1조를 이렇게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인간의 존엄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인권보장의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 제2항 시민법은 자연법의 한계 안에서 보장된다.”